‘제2카카오 사태’ 막게… ‘스톡옵션 먹튀’ 금지

오늘부터 의무 보유 기간, 기본 6개월에 대상별 추가 적용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법인 의무보유 부과 근거 명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상장사 임원 등이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간 팔 수 없다. 작년 말 논란을 부른 카카오페이의 ‘스톡옵션 먹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18일 이후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17일 한국거래소(거래소)는 전날 금융위원회(금융위)에서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을 승인함에 따라 관련 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와 의무보유 기간 및 대상자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의무보유 △의무보유 대상자의 요청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추가 연장 등의 근거 명시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 상장기업 임원에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 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무보유 부과 근거 명시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예컨대 신규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한다.

의무보유 대상자도 확대했다.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또한 의무보유기간 만료 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해 의무보유 기간을 차등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6개월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회사는 대표이사(등기임원) 보유주식에 1년(기본 6개월+추가 6개월), 업무집행지시자 보유주식에 6개월을 적용하며 의무보유 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기업의 자발적 보유확약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 대상 주식 등에 대해서도 예탁결제원에 등록돼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면서 “이번 규정의 시행으로 상장 초기 기업의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형성 등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달릴까 말까 (3.17공시)

▶대상홀딩스[084690]=초록마을 지분 443억원 처분 결정

▶디아이[003160]=삼성전자와 반도체 검사장비 14억원 공급계약 체결

▶영원무역홀딩스[009970]=자회사 영원아웃도어 427억원 결산배당 결정

▶메디포스트[078160]=사모펀드에 지분 매각… ㅈ최대주주 변경

▶육일씨엔에쓰[191410]=종속사 씨엔에이 40억원 채무보증 결정

▶블리츠웨이[369370]=2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바이오솔루션[086820]=피부 상태 개선용 조성물 특허권 취득

▶에스티팜[237690]=글로벌 제약사와 806억원 공급계약 체결

▶오로스테크놀로지[322310]=SK하이닉스와 23억원 공급계약 체결

▶오이솔루션[322310]=30억원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원자재 ETF·ETN, 거래량 3배 폭증… 소비자경보 ‘주의’

괴리율 확대로 ‘투자유의종목 지정’… 가격 급변으로 ‘거래정지’
금감원 “원자재 시장 불확실성지속… 개인투자자 주의해야”

유가가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이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가운데 이와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거래량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원자재 금융상품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고 거래가 정지되는 등 투자위험도 커진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원자재 관련 ETF·ETN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원유선물 가격은 1월31일 배럴당 88.15달러에서 2월28일 95.72달러, 3월8일 123.70달러까지 치솟은 뒤 15일 96.44달러로 하락하며 크게 변동했다. 같은 기간 니켈 가격도 톤당 2만2800달러에서 2만5240달러, 4만8201달러, 4만8196달러 등으로 한 달 반 사이 두 배 이상 급등했다.

가격이 오르자 원자재 관련 금융상품에도 돈이 몰렸다. 원자재 관련 ETF·ETN의 이달 1~11일 일평균 거래대금은 1752억원으로 전월(620억원) 대비 183% 급증했다. 이 중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월(336억원)보다 약 3배 늘어난 약 948억원에 달했다. 개인투자자는 주로 원유 상품(71.5%)을 거래했다. 특히 고위험 (인버스)레버리지(±2배) 상품에 대한 거래가 46.8%를 차지했다.

개인 매수가 많은 원유 관련 ETF·ETN의 경우 수급 불균형으로 괴리율이 10%를 초과하기도 했으며 ‘신한 인버스 2X WTI원유선물 ETN(H)’ 등 일부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대신 인버스 2X 니켈선물 ETN(H)’은 니켈 가격 폭등으로 기초자산인 인버스 2X 니켈 선물지수의 산출이 어려워 거래소가 8일 거래를 정지했다.

금감원은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관련 ETF·ETN 투자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 지속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ETN 투자 시 각별한 주의 △괴리율 확대에 따른 투자손실 확대 △투자유의종목 등 거래소 정보 확인 필요 등이다.

우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고 관련 국제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정확하거나 불투명한 정보에 기반해 접근할 경우 급격한 시장변동으로 인한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서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투자자들은 원자재 관련 금융상품 투자 시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조언이다.

또한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ETN의 수익률은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배수(레버리지 또는 인버스의 배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변동성 높은 원자재 시장 상황에서는 투자자의 투자손실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상장법인 회계부정 신고, 지난해 ‘92건’

금감원 “전년대비 30% 늘어 익명신고제 일정부분 기여”

금융감독원. 박미나 기자

1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 행위 신고는 총 92건으로 전년 대비 27.8% 늘어났다. 이 중 14건은 익명신고로 2020년 3월 도입한 익명신고제도가 신고제도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했다.

금융감독당국은 20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계부정 예방효과를 제고하려고 회계부정신고 관련 포상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다.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2사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3사에 대해서는 감리결과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9사는 현재 심사 또는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매출 과대계상(10사), 자산 과대계상(2사), 부채 계상누락(1사) 등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5명의 제보자에 대해 지난해 총 2억28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전년 대비 1억7980만원(44%) 감소했지만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4572만원으로 전년(3403만원) 대비 1169만원(34.3%) 늘어났다.

금감원은 포상금 제도 운영방향으로 △모바일을 통한 회계부정신고 접수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 확대 △내실 있는 익명신고제도 운용 △내부신고자 신분보호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고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모바일을 통해서도 상장법인의 회계부정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등으로만 접수했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후 신고에 대해서는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부정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 윤승준 기자 sjyoon@